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5.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4월 25일
- 나. 제출자 : 이재형 의원 외 3인
- 다. 회부일자 : 2013년 4월 25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 4.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재형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역사회 주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여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지역사회 주민 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주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주민안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로 주민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능 및 구성·운영사항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 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주민안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민안전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 주민안전지원센터의 운영과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인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세종특별시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경찰 인력부족 등에 따른 치안 공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안전지원센터 설치 등 안전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에 이바지 하는 각종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
----------	-----

발의년월일 : 2013년 4 월 일

발 의 자 : 이재형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주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역사회 주민 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주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주민안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로 주민안전지원센터
를 설치하고 기능 및 구성·운영사항에 관한 규정을 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자치행정과

라. 자치법규안 :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안전”이란 주민에게 신체적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방법 취약계층”이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을 말한다.
4. “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사회 주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
3. 주민안전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주민 의견수렴
4. 주민안전과 관련한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및 협의
5. 주민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주민안전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민안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안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명칭은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센터”로 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3. 교통질서 준수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각종 불법·탈법행위 계도, 신고 및 방범 활동

5. 방법 취약계층의 보호와 민경 합동 치안협력
6.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발굴 및 제공
7. 주민안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안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직원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